

문서번호	기획예산과-102189
결재일자	2015.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10052호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박찬희	김건희	代 변민수	길수철	전결 11/16 代 정찬모
협 조				

**2016~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안)보고**



기 획 경 제 국
(기 획 예 산 과)

2016~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

우리구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5개년간 전망하여 반영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계획적인 지방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I 개 요

■ 작성근거

- 지방재정법 제33조(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주요내용

- (재정목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 수립개요

- 계획기간 : 2016~2020년(5년)

2016	2017	2018	2019	2020
최종예산안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 작성대상 및 기준

- 작성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 작성기준

- '16년도 예산 :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16년도 최종 예산 전망치 작성

- '16년도 이후 : '16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 적용하여 발전계획 수립

- 「'15~'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분야별 지출총액을 기초로 작성 하되, '16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부 가감 조정
- (변동요인이 없는 사업) 「'15~'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투자 계획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성
- (변동요인이 있는 사업) 법령 제개정, 국고보조사업 수요 조정 등 「'15~'20년 중기계획」 수립 이후 변동이 발생한 경우, 투자 계획을 조정하여 반영 (투자계획 조정시, 투자계획 조정사유를 명확히 부기)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예산규모는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예측·작성하여 의회제출 예산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수립기준

- 『'15~'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 사항
- 자치단체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는 비전과 정책 실현여부
-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2016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수립

■ 분야별 편성 우선순위

- 경상경비(인건비, 기본경비) 및 법정 의무경비
- 타기관 지원금(출자·출연금, 기금일반적립금, 공기관대행사업비 등)
- 연례 반복적 경상사업은 물가상승 및 사업량 변동을 고려하여 편성
-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추진 방식을 창의적 마인드로 재검토하여 예산절감 방안 모색

II 재정 전망

재정규모

-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2조 6,70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 2,263억원(83.4%), 특별회계는 813억원(3.1%)
기금은 3,632억원(13.5%)임.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계	2,670,982	483,542	532,824	540,494	548,905	565,217
일반회계	2,226,375	410,018	432,866	446,988	460,732	475,771
특별회계	81,366	16,548	17,115	20,228	13,707	13,768
의료급여금	1,502	294	297	300	303	306
주차장	79,864	16,253	16,818	19,928	13,403	13,462
기 금	363,242	56,976	82,843	73,277	74,467	75,679
광진구장학기금	12,885	2,368	2,472	2,577	2,679	2,789
우의망고정기금	3,084	598	609	621	622	633
공영및공공의 창사발전기금	290,621	42,929	68,603	58,723	59,698	60,669
재난관리기금	9,074	1,770	1,794	1,820	1,834	1,855
노인복지기금	3,908	766	771	781	790	800
중소기업육성기금	16,495	3,262	3,281	3,304	3,317	3,330
식품진흥기금	4,719	919	931	943	956	970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2,335	475	434	470	477	479
도로굴착복구기금	9,663	1,878	1,891	1,943	1,963	1,988
여성발전기금	2,669	502	525	537	547	558
자활기금	7,790	1,510	1,533	1,558	1,582	1,607

※ 최종예산 기준

■ 세입전망 총괄(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계	2,670,982	483,542	532,824	540,494	549,105	565,017
자체재원	575,046	109,701	113,417	115,545	117,496	118,887
지방세수입	352,331	67,879	69,147	70,443	71,762	73,100
세외수입	222,715	41,822	44,270	45,102	45,734	45,787
의존재원	1,555,988	283,868	302,488	315,844	321,499	332,489
지방교부세	23,005	4,309	4,429	4,609	4,759	4,899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94,334	109,153	111,307	120,212	123,652	130,010
보조금	938,648	170,406	186,752	191,023	193,088	197,38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39,949	89,973	116,919	109,105	110,111	113,842

■ 세입전망(일반회계 기준)

-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2조 2,263억원으로
 자체재원은 5,289억원(23.8%), 의존재원은 1조 5,402억원(69.2%)
 보전수입 등은 1,571억원(7.1%)임.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계	2,226,375	410,018	432,866	446,988	460,932	475,571
자체재원	528,975	100,714	104,316	106,286	107,984	109,677
지방세수입	352,331	67,879	69,147	70,443	71,762	73,100
세외수입	176,644	32,835	35,169	35,843	36,221	36,577
의존재원	1,540,273	280,403	298,488	309,022	320,492	331,869
지방교부세	23,005	4,309	4,429	4,609	4,759	4,899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94,334	109,153	111,307	120,212	123,652	130,010
보 조 금	922,934	166,941	182,752	184,201	192,081	196,959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57,126	28,901	30,062	31,681	32,257	34,225

■ 세출전망(일반회계 기준)

○ 계획기간 중 총 세출규모는 2조 2,263억원으로

사업비는 1조 5,919억원(71.5%), 경상경비는 6,344억원(28.5%)임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계	2,226,375	410,018	432,866	446,988	460,732	475,771
사 업 비	1,591,950	288,159	300,848	321,427	336,228	345,288
경 상 경 비	634,425	121,860	132,018	125,561	124,504	130,482
행정운영경비	521,802	101,473	102,175	104,699	104,984	108,472
재무활동	95,623	17,387	26,615	17,435	15,996	18,189
예 비 비	16,999	3,000	3,227	3,427	3,523	3,821

Ⅲ 향후추진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심의개최

○ 일 시 : 2015. 11. 17.(화)

○ 내 용 : 2016 ~ 2020 중기지방재정계획(안)심의

■ 중기지방재정계획 의회 제출

○ 근 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

○ 제출기한 : 2015. 11. 20.

■ 중기지방재정계획 행정자치부에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 배부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하여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 배부 업무 활용

붙임 : 2016 ~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1부.